



누구나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자료제공: 법무담당관실 ☎ 061-286-2624)

전라남도에서는 어려운 법률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 **도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안내

어떻게 이용하나요?		다른 기관 서비스는?	
대 상	전남도민 누구나	마을변호사 (법무부, 행안부)	전화, 이메일, 방문 상담 각 시군 읍면동사무소 문의 - 전남 155명 위촉(목포시 제외)
상담내용	민사, 형사, 가사 등 법률 전반	대한법률 구조공단 (법무부)	전화 및 방문상담 공단 누리집 사이버 상담 연락처: 국번없이 132
신청방법	전라남도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https://law.jeonnam.go.kr) 에 신청	법률홍닥터 (법무부)	출장 방문상담 연락처: 전남사회복지협의회 (무안) 061-285-1161
상담방법	신청 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전라남도 무료 법률상담관* 이 서면, 사이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	광주지방 변호사회 무료법률상담	방문상담 누리집 사이버 상담 연락처: 변호사 상담실 062-222-0420
* 전남 도내 지역별(서부, 중부, 동부) 위촉 변호사			
문의전화	전라남도 법무담당관실 (061-286-2624)		

도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작은 고민도 크게 듣겠습니다.

전라남도

법무상식 2020년 8월 통권 제334호

www.jeonnam.go.kr

CONTENTS

4	새로운 판례
12	법령해석사례(법제처)
34	행정심판 재결사례
53	생활법률 상담사례
60	법무단신
79	최근 개정 시행법령
88	최근 제정 자치법규
102	솔로몬의 재판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새로운 판례

●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사망 등 중대한 결과’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18다276799

이 사건 자동차보험의 특별약관 제3조, 보통약관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등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는 이를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 등으로 인한 손해는 위 면책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다39898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는 단순히 그 결과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가 의도한 결과와 피해자에게 실제 발생한 결과 간의 차이,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고의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직장동료들 간의 모임이 끝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술 한 잔 더하자’며 가해자

운전의 자동차 보닛 위에 올라타 장난을 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역시 가해자도 장난삼아 자동차를 서서히 움직이다가 갑자기 제동하여 피해자를 보닛에서 굴러 떨어뜨려 하지부전마비 및 인지기능저하 등으로 노동능력상실률 44%의 영구장해 및 대소변, 식사 등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매일 성인 1인의 8시간 개호가 필요한 중증 의존 상태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 및 가족인 원고들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 결과가 ‘사망 등과 같은 중대한 결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위 면책약관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해자는 피해자가 차량에서 떨어지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을 인식·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있으나,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도의 영구장해와 중증 의존 상태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한 사례.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 대법원 2017두66602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라면 위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원고가 토지에 방치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기 이전 1차, 2차 조치명령을 받고,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각 조치명령 불이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유죄판결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의견청취가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그 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결과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 상고이유를 배척한 사례.

● 원심이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인 것은 심리미진 등의 잘못에 해당하는지(적극)

* 대법원 2018도14415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제는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일반론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나, 어느 추상적인 법개념이 현실세계에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어진 사실관계가 해당 법개념에 포섭되는지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처럼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도 병역거부를 하게 된 원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 자체는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피고인이 특정 종교를 신봉하고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양심에 기반을 둔 병역거부라고 단정할 수 없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의 주장에 관해서는 앞서 주요한 판단요소로 예시한 바를 중심으로 양심과 관련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는지를 신중하고 충실하게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이 간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병역거부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주장하는 ‘양심’이 과연 그 주장에 상응하는 만큼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도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속한다는 점을 일반론으로서 밝히는 정도에 그쳤을 뿐,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병역거부가 그의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한 충분한 심리 없이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양심적 병역거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병역거부를 하게 된 원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인 심리·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을 지적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 채용 절차에 있는 구직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20도56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데, 제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형법 제303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관한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085 판결 참조)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 ☞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이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 (1)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들어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 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의 부당이득징수처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정지 처분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 대법원 2020두31668, 31675(병합)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고,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과는 그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으로 각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과 다른 개별 행정법률의 입법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령·의료급여법령상 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른 부당이득징수 및 업무정지처분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 참조).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16. 6. 3. 보건복지부령 제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려는 것이고, 특수의료장비와 관련하여 ‘일정한 인력·시설을 갖추어 등록하고 정기적인 품질관리검사를 받을 것’을 요양급여의 기준으로 정한 것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의 위임에 따른 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019. 1. 10. 보건복지부령 제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 가운데 위에서 본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제재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비전속 영상학과 전문의의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고 등록된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등을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비전속 영상학과 전문의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위 전문의가 전산화단층 촬영장치 및 유방 촬영용 장치의 의료영상 품질 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고가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98조 제1항 제1호,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기준과 부당이득징수·업무정지의 대상에 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법령해석사례(법제처)

사례 1

민원인 -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이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함)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해당 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주택 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각주: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대지의 안전) 및 제57조(간선시설)의 기준에 부합하게 대지를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되는지?



회 답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은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한정됩니다.



이 유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사업의 근거 법률과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는바, 같은 별표에 따른 개발사업은 법률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한 개발사업의 범위에서 체계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은 일단의 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같은 호에서 택지개발사업에 포함하도록 한 “주택단지조성사업”도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 주택 등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은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외에 같은 호 나목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별도로 규정한 것은, 「주택법」의 적용대상인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 면적이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인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바, 대지조성공사가 필요 없는 토지에서 주택건설사업만을 하는 경우까지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각주: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두43349 판결례 및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례 등 참조)

만약 이와 달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주택건설사업을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주택건설사업까지 포함한다고 본다면 같은 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바, 개발부담금의 부과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각주: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두13791 판결례 참조)는 해석의 원칙에도 반하게 됩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① 개발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 8. (생략)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규모 및 동일인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대상 사업) ① 법 제5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 법률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 대상 토지의 면적(부과 종료 시점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등록 사항 중 면적을 정정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면적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 ② ~ ④ (생략)

[별표 1]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 관련)

사업 종류

근거 법률 및 사업명

비고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1)~3) (생략)

가.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은 제외한다.

-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시행(이하 “토지개발사업시행”이라 한다)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2)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토지개발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 3)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換地)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8.(생략)

비고

개별 법령에서 특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으면 위 표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으로 본다.

〈관계 법령〉

사례 2

민원인 - 조성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 제9743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2항 등 관련)



질의요지

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학교용지법”이라 함)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의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시·도(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함.)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무상(無償)”은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는 경우를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이 사안과 같이 개발사업시행자가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리고 구 학교용지법 개정 당시 종전에는 제4조제3항제1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으로 공급가액을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조성원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학교신설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관련 예산이 부족하자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공영개발사업시행자에게 비용부담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각주: 구 학교용지법 개정 관련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공영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무상공급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를 신설하여 학교용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학교용지부담금의 의무적 면제 사유로 규정한 것임을 고려하더라도,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일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공급하는 경우까지 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구 학교용지법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학교용지의 일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일부를 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각주: 서울고등법원 2016. 1. 20. 선고 2014누73809 판결례 참조)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된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②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생 략)

④ ~ ⑧ (생 략)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 ③ (생 략)

④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 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제2조(학교용지의 공급가액에 관한 적용례)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 19일부터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항 각 호의 인가 등을 신청하거나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도시개발법」 제21조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제외한다) 지역 내 학교용지 중 이 법 시행 후 학교용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20으로 하고, 고등학교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30으로 한다.

〈관계 법령〉

사례 3

국토교통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여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 등 관련)

질의요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이라 함) 제59조의2제1항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해서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함)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지 않고 물류시설법에 따를 수 있는지?

회 답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단절차간소화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 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며(각주: 법제처 2019. 10. 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입법자가 준용규정을 두는 것은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음으로써 법률규정을 간결하게 하고 표현의 경제성을 꾀하기 위한 것인바,(각주: 헌법재판소 2010. 9. 30. 선고 2009헌바355 결정례 참조) 물류시설법 제4장(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서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에 제59조의2를 두어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산단절차간소화법 준용 여부에 대해 재량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이 2008년 6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되면서 타법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와 물류단지의 지정·개발 절차가 유사하고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물류단지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여 물류시설을 원활히 공급할 필요성 또한 인정됨에 따라 물류단지에 대해서도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하도록 한 것(각주: 2008. 4. 22. 의안번호 제178329호 발의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에 대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이므로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는 같은 법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한 규정에 대한 특례 또는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에서는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특별법인 같은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등(각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말함.)이 산업입지법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입지법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지정·개발 절차를 따르도록 특례를 규정(각주: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개정된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하고 있으므로, 산단절차간소화법과 물류시설법의 관계에서도 물류시설법에 따라 지정·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2항부터 같은 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물류시설법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는 물류시설법 제59조의2제2항에 따라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준용해야 하고, 준용되는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8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제외하고 물류시설법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 절차에 관해 산단절차간소화법을 선택적으로 준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책적으로 검토한 후 물류시설법 제59조의2를 명확히 정비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 본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③ (생 략)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8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민간기업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을 요청하거나 지정권자가 단독으로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또는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및 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다.

- ③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정·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 기간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르며, 농공단지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개발과 관련한 지원, 시·도지사 승인 의제 등에 관하여는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이 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⑧ 제7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계획으로 보며,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17조,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사례 4

민원인 -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등 관련)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에 대해 절토한 후 성토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미터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절토·성토 중 어느 하나라도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지?

회 답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의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는 절토·성토 중 어느 하나가 2미터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제2호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도록 제외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는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3호에서는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규정하고 있고, 통상 가운데땅은 열거할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사용(각주: 「한글 맞춤법」(문화체육관광부고시) 별표 문장부호 제5호(1) 참조)하므로 절토와 성토는 정지 또는 포장 등과 같이 각각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방법의 종류로 보아야 하며, 절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성토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모두 각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제4호 본문에서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형질변경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를 위한 형질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가 각각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변경에 대해 관할관청에서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와 달리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를 절토와 성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토지의 형질변경 전에 비해 2미터 이상 변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본다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제3호가목에서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규정한 것도 절토 또는 성토의 규모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게 될 뿐 아니라, 토지의 이용과 환경적 보전의 조화를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며 국토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제도의 취지(각주: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1218호) 제1장제2절 1-2-1 참조)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 5. (생략)
- ② ~ ④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략)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 6. (생략)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1. ~ 3. (생략)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에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사례 5

행정안전부 -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의 범위 등(「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는지?

나.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이 사안과 같이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는 지역이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함)의 표시 또는 설치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 허가·신고 시 “직접 보이는 지역”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그 지역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이는 허가 또는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며,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옥외광고물을 정의하고 있고, 특히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 일정한 지역에서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려는 경우를 허가·신고 대상으로 규율한 것은 광고물등이 방임될 경우 국민의 주거환경과 국토경관이 크게 침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국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침해될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각주: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6헌바2 결정례 참조)임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 및 하천의 경계지점을 기준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역에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더라도 이는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현실적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지역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에서는 같은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와 형벌까지 부과되는 경우 관련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나 형벌 부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 (각주: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및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례 참조)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 의무를 위반한 광고물등은 제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대집행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제10조·제10조의3제1항) 대상이 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는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제18조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직접 보이는 지역”을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서는 직접 보이지 않지만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된다고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수목이나 건축물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물은 계절의 변화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어떠한 지역이든 시기에 따라 직접 보이는지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을 허가 또는 신고 시점에는 광고물등이 직접 보이지 않지만 향후 보일 가능성이 있는 지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면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 제한한 규정이 무의미해진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지역 범위에 혼란이 없도록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직접 보이는 지역”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질의 내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서는 광고물등을 표시 또는 설치하기 위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지역으로 도로와 도로의 주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도로법」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같은 법 제10조에서 도로의 종류를 각 호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으나,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를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보행자와 자동차 등의 통행방법, 도로에서의 의무 및 금지행위 등을 규율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에도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까지 포함하여 도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 제2조제1호에서는 같은 법의 규율대상인 옥외광고물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임을 전제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제도의 취지는 광고물등의 무분별한 남설로 도시미관 및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각주: 1990. 6. 27. 의안번호 제130869호로 발의된 후 1990. 7. 14. 대안반영폐기된 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내무위원회 심사 보고서 참조)임을 고려하면,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의 허가·신고 대상 지역의 기준이 되는 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로 한정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로서 일반적인 개념의 도로로 보는 것이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 및 허가·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부합합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제2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에서는 같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하는 경우 광고물등의 종류·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주이용간판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접도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도로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은 옥외광고물법령의 체계적 해석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도로”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 ⑦ (생략)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허가, 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③ (생략)

〈관계 법령〉

사례 6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질의요지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주택의 요건으로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 중 “세대원”에 세대주가 포함되는 지?(각주: 어업인이 아니거나 어업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일 것을 전제함.)

회 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의 “세대원”에는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이 유

「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의 하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에서는 농업인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이하 “농업등”이라 함)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을 농업인 주택의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대원의 의미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 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며(제28조 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의 설치가 허용되는바, 이는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농업등 경영상 편의를 위해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당 세대가 실질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일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농업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판단함에 있어 세대주의 노동력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는데, (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 21853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 9. (생 략)

② ~ ④ (생 략)

농지법 시행령

제29조(농업진흥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 ~ ③ (생 략)

④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농업인 또는 어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1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해당 세대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에 따른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해당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

2. 3. (생 략)

⑤ ~ ⑦ (생 략)



행정심판 재결사례

【제2019-333호, 건축(소축사)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31. 청구인에게 한 건축(소축사)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OO군 OO읍 OO리 000-0번지 외 3필지(부지면적 5,491㎡, 연면적 2,087.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식물 관련시설(소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지상 1층/ 1동, 일반철골구조) 허가 신청(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포함)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2. 18. OO군 *****, *****, ****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하였다.

피청구인이 OO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자,

OO군 계획위원회는 2019. 8. 8. 2019년 제11회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①주거밀집지역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②인근에 기존 축사가 다수 있어 악취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 위배되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31. 청구인에게 부결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10. 24.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8. 31. 청구인에게 한 건축(소축사)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 구 인

-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축사 신청지가 주거밀집지역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기존 축사가 여러 개 있어 악취 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고 하는데, OO리 주민들은 23번 국도에서 왼쪽 도로를 이용하여 마을까지 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주장한 마을 진출입로는 군도 4호선(OO길 2길)에서 축사 신청지를 경유하여 마을로 진출입하는 도로는 현재 농로로 활용하고 있다.
 - 가) 인근에 기존 축사가 여러 개 있어 악취 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고 하는데,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고액 분리 후 저장 액비화 시설로 유입하여 축사 내에 순환하므로 외부로 방출하지 않고, 통풍식 톱밥 발효시설(호기성 퇴비화)에서 처리한 후 퇴비를 위탁 처리할 예정이며, 악취 저감시설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
 -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축사 건축허가를 내 준 상태로 이미 개발행위허가를 해 준 축사들의 허가조건과 청구인에 대한 반려처분 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 다) 이 사건 반려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생존권과 재산권 침해 등의 사익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 2) 피청구인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하였는데,

- 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 관련 별표 1의2 및 「○○군 도시계획 조례」제20조에 따르면,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없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농지법」제32조제2항에서도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농업인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축산업용 시설), 공작물, 그 밖의 시설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국토교통부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는 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살펴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신청지는 지목이 전,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이고, 「농지법」에 따른 농업보호구역으로 같은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서의 축사 건축은 자유롭게 하고 있으며, 농업보호구역 내 농지에 축사를 짓는 것도 농업행위에 해당하므로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축사 건축을 반려할 수는 없다.
- 3) 신청지 주변에 기존 건축허가를 받아 여러 개의 소축사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비교·형평의 원칙을 위배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또한, 악취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막연한 우려 정도의 추상적 판단이므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축사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의 우려는 악취 저감시설 및 오염물질 제어시설 설치 등을 통해서도 해결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판단 없이 반려처분한 것은 청구인의 이익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 4)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

1)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 부존재

- 가) 판례는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과 관련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 등 구체적 지역 상황과 상반되는 이익을 가진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권익 균형 및 환경권의 보호에 관한 각종 규정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그 심사 및 판단에는, ①우리 헌법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제35조제1항) 환경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②「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이념에 근거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2조), ③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에 발생할 불확실한 상황과 파급효과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요건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당초 예측이나 평가와 일부 다른 내용의 감정의견이 제시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쉽게 행정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나) 동물관련시설(소축사 및 퇴비사)은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며 군 계획위원회 심의는 자연적 여건, 난개발 방지, 안전, 경관, 환경, 기반시설 설치여부, 주민생활 환경의 위해여부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되는 사항이다.

다) 청구인은 축사신청부지인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길이 마을 진출입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단순한 농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도 23호선에서 왼쪽으로 들어가 이 사건 토지까지 약 700m 거리의 폭 6~8m의 아스팔트 포장 도로는 현재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해당한다. 이 사건 토지에서 마을 입구로 들어가는 폭 4m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길 또한 위 아스팔트 포장

도로와 연속된 마을 진출입로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토지는 인근 도로의 지반고보다 약 1m 이상 높아 축사 건물을 신축할 경우 주변 경관훼손의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고, 마을초입으로 주거지로서 이미지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라) OO군 계획위원회에서는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 환경 및 경관 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축사 건축을 부결하였다.

또한, 이 사건 축사 건축으로 인해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한 예측이 곤란하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는 한 번 발생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 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은 보다 폭넓게 존중할 필요가 있다.

마) 이처럼 OO군 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피청구인의 재량적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거나 상반되는 이익이나 가치를 대비해 볼 때 형평이나 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이 평등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 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의 축사 부지 인근에 있는 기존 축사들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연번	위 치	용 도	연면적	신축년도	소유자	비 고
1	OO리 ***** 외*	소축사	1,459.96㎡	2006년 추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2	OO리 산*****	젓소사	3,892.32㎡	1995년 추정	***	무허가 (축사 적법화)
3	OO리 ***	소축사	1,556.76㎡	2010년	***	2010. 4. 13. 허가

1번, 2번의 무허가 축사들은 현재 ‘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별조치’에 의해 양성화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축사로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면제받은 축사에 해당한다.

또한, 3번 축사는 2010년경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인 「국토의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이 제정(2013. 7.)되기 전에 건축허가를 득한 경우이고,

「OO군 가축 사육 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가 제정(2010. 12.)되기 전의 건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과 제3자의 건축허가신청은 동종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즉,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기존 축사 허가와 동일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3자와 차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 법령

- 1) 「건축법」제11조
- 2) 국토계획법 제56조, 제57조,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57조
- 3) 「농지법」제32조
- 4) 「OO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9. 4. 16. 개정 전의 것) 제3조
- 5) 같은 조례(2019. 4. 16. 개정 후) 제3조, 부칙 제2항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2. 15. 피청구인에게 OO군 OO읍 OO리 000-0번지 외 3필지(부지면적 5,491㎡, 연면적 2,087.5㎡)에 동·식물관련시설(소축사 및 퇴비사)를 신축하기 위해 건축(지상 1층/ 1동, 일반철골구조)허가 신청(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 포함)을 하였다.
- 2) 피청구인은 2019. 2. 18. OO군 *****, *****, ****에게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 법 검토 의뢰를 하였다.
- 3) 피청구인이 OO군 계획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자, OO군 계획위원회는 2019. 8. 8. 2019년 제11회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①주거 밀집지역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②인근에 기존 축사가 다수 있어 악취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 위배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여 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하였다.
- 4) 이를 반영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31. 청구인에게 부결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 5) 청구인은 2019. 10. 24.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6) 2020. 1. 14.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23호선에서 약 700m 정도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 OO리 1리와 OO리 2리 마을로 진·출입하는 도로에 위치하고, 신청지에서 약 220m 거리에 OO리 2리(24호 40명 거주) 마을이, 신청지에서 약 400m 거리에 OO리 1리(27호 44명 거주) 마을이 각각 위치하며, 신청지는 인근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개활지이고, 인근에 기존 축사가 다수 입지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 소축사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악취 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었으며, 인근 동네 주민들(참석 주민 13명)은 청구인이 마을 주민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소축사의 건축에 찬성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건축허가에 대하여 「건축법」제11조제1항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협의 의제에 대해 같은 법 제11조제5항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58조제1항제4호는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고, 주변지역과 관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1호라목은 “①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②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③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해 같은 법 제59조제1항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대해 규정하는 「OO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9. 4. 16. 개정 전의 것) 제3조제2항은 “금지지역은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업지역으로 하고, 상대제한구역은 금지지역 외 지역 중에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한거리 내의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별표 2]는 “1. 금지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3.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OO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9. 4. 16. 개정) [별표 2]는

- “① 금지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건축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하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공공기관, 종교시설, 휴게·일반음식점 및 공원, 염전의 부지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지적·임야도상 직선거리로 하며 소, 젖소의 사육제한거리는 - 건축연면적 2,500㎡ 미만: 200m 이내, - 건축연면적 2,500㎡ 이상: 500m 이내
- ②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하며 소, 젖소의 사육제한거리는 - 건축연면적 2,500㎡ 미만: 100m 이내, - 건축연면적 2,500㎡ 이상: 200m 이내
- ③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하며 소, 젖소의 사육제한거리는 - 건축연면적 2,500㎡ 미만: 100m 이내, - 건축연면적 2,500㎡ 이상: 200m 이내
- ④ 관광지 및 관광특구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 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에 대하여 같은 조례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3) OO군 계획위원회는 2019. 8. 8. 2019년 제11회 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8. 23. 피청구인에게 ①주거밀집지역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②인근에 기존 축사가 다수 있어 악취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 위배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피청구인은 2019. 8. 31. 청구인에게 부결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 처분을 하였으므로, 반려 사유에 대해 살펴보면

1. 4) 피청구인은 OO군 계획위원회의 부결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반려처분에 이른 것이나, 국토계획법령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므로 행정기관의 장이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대로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
- 5) 주거밀집지역 진출입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기존 축사가 다수 있어 악취 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을 위배한다는 사유에 대하여
 - ①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 대해 규정하는「OO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2019. 4. 16. 개정 전의 것)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2]는 “1. 금지 지역 경계선, 최근접 주거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대지경계선 및 염전으로부터 가축사육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까지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돼지·닭·오리·개 축사는 1,000m 이내, 기타 가축은 200m 이내, 2.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3. 돼지, 닭, 오리, 개 축사는 군도 이상의 도로 경계로부터 2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 조치로 같은 조례 부칙 제2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가축사육제한 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은 2019. 2. 15.에 있었으므로「OO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부칙 제2항에 따라 OO천에서 거리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지에 소축사를 신축하는 데 조례상 제한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또한, 2020. 1. 14.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국도 23호선에서 약 700m 정도 왕복 2차로 도로를 따라 OO리 1리와 OO리 2리 마을로 진·출입하는 도로에 위치하고, 신청지에서 약 220m 거리에 OO리 2리(24호 40명 거주) 마을이, 신청지에서 약 400m 거리에 OO리 1리(27호 44명 거주) 마을이 각각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어 관련 조례상 거리 제한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청지 인근은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개활지이고, 인근에 기존 축사가 여러 개 입지하고 있어 이 사건 신청지에 소축사를 건축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악취 발생 등 주민 행복추구권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인근 동네 주민들은 청구인이 마을 주민임을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소축사의 건축에 찬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반려 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 6)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 별표 1 ‘개발행위허가 세부 심의 기준’에 따라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 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청구인이 들고 있는 반려 사유는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 법령과 피청구인이 이 사건 반려처분을 통해 지키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인정할 수 있다.
- 7)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이나 비례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제2019-334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천만 원 처분 취소청구】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9. 17.부터 00시 00로 177(00동) 소재에서 ‘24시 ** ** ***** **’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전 영업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 8. 27. 02: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00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청구외 전 영업주인 ***의 종업원 000가 청소년 000(남, 18세), 000(남, 15세)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 등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2019. 10. 7. 광주지방검찰청00지청장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업원 000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게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의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감경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60일에서 1/2 감경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자, 청구인은 2019. 10. 24.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게 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당사자 주장요지

가. 청구인

- 1) 청구인은 2019. 9. 17.부터 전 영업주(***)로부터 영업주 지위승계를 받아 이 사건 업소를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종업원 8명을 고용하고 있다.
- 2) 2019. 8. 27. 02:22경 전 영업주(***)이 운영할 당시 종업원 ○○○가 홀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손님 3명이 들어와 1명은 떡갈비를 주문하면서 따로 테이블에서 식사만 하였고, 2명은 돼지국밥을 주문하면서 추가로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종업원이 소주를 주문한 2명(○○○, ○○○)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우리는 충만치킨에서 일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면서, ○○○는 휴대전화에 저장한 주민등록증(00년생) 사진을 제시하였고, 종업원은 ○○○가 성년임을 확인하였다.

종업원이 나머지 일행인 ○○○에게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자, ○○○가 ○○○에게 “형”이라고 불러, 종업원은 ○○○가 00년생인 ○○○보다 나이가 더 많은 성년으로 판단하였으며, 더구나 ○○○의 외모가 ○○○보다 훨씬 더 성숙해 보여서 당연히 성년으로 알고 소주 1병을 가져다 주었다.

잠시 후 이들이 식사를 거의 마치고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는데, 약 10분 후,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들어와 곧바로 이들에게 다가가 신분 확인을 하였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신분증을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3) CCTV 화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종업원 ○○○는 불빛이 밝은 계산대에서 주민등록증 사진을 면밀하게 확인하였으나, 경찰관들도 위조 여부를 식별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게 위조한 사진이었으며, 또한, 청소년 ○○○가 나머지 일행에게 “형”이라고 부르면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려는 종업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한 것으로, 이는 사전에 철저하게 모의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112 신고가 “미성년자 3명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신다”라는 내용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아, 적발 청소년들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이들은 상습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청소년들이 사전모의로 종업원을 속인 것으로, 청구인은 영업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 선의의 피해자인 점을 고려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 4)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 금지 등 사회 통념적 판단과 관련 법 규정을 익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 한 번도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 5) 또한, 이 사건 업소는 주로 콩나물국밥을 판매하는 영세 사업장으로, 청구인은 업소를 인수하면서 빌린 공사대금을 갚으며 하루하루 벌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경기 침체와 영업 부진으로 가게 재정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3,0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과 가족은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므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 1) 영업주 및 종사자는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증을 요구하여 나이 확인을 하여야 하나, 손님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용모만으로 성인으로 판단하여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영업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 2) OO경찰서 적발보고서의 종업원 ○○○의 진술을 보면, 손님 중 1명은 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고, 손님들이 총○○○ 종업원들로 이 사건 업소에 자주 와서 밥을 먹었기에 이들을 성년으로 알고 나머지 1명에 대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한 것으로, 휴대전화 사진만으로 주민등록증을 확인한다는 것 또한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 3)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차단하는 일은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으로 개인이 받아야 할 손해보다 앞서야 하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회에 경각심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한 것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어려운 환경에 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고 하나 총체적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영업주에게 있는바 위반행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주는 그로 인한 행정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4) 따라서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한 행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의의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기각하여야 한다.

4. 관계 법령

- 1) 「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28조
- 2)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24조
- 3)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 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관련 [별표 23]

5. 판 단

가.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각종 증거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1) 청구인은 2019. 9. 17. 청구외 전 영업주(***)로부터 영업주 지위를 승계 받아 ○○시 ○○로 177(○○동) 소재에서 “24*****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 2) ○○경찰서장은 2019. 9.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업소 적발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위반일시 : 2019. 8. 27. 02:22경

－ 위반내용 : 종업원 ○○○는 청소년 ○○○와 ○○○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을 제공.

－ 조 치

- “미성년자 3명이 신분증을 위조해 출입하여 술을 마신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업소에 현장 출동한바, 미성년자로 보이는 ○○○, ○○○, ○○○가 함께 국밥과 술을 마시고 있어 신분증 제시 요구하니, ○○○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놓은 자신 명의의 주민등록증(출생연도를 01년생에서 00년생으로 변조)을 제시하였고, ○○○는 03년생이라고 진술함.

〈종업원 ○○○의 진술〉

- 남자 3명이 국밥과 술을 시켜서 주민등록증 검사를 한다고 하자, ○○○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음.

- 종업원은 “진짜 미성년자가 아니냐?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 걸리면 큰일난다”라고 이들에게 말하였으나, 청소년들은 “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미성년자가 아니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하였음.

- 평소 충○○○집 직원들이 자주 가게에 와서 밥을 먹기에 20살인 줄 알고 ○○○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등록증만 확인하고 ○○○의 주민등록증은 확인하지 않고 소주 1병을 제공하였음.

〈청소년 ○○○의 진술〉

- 변조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술이 먹고 싶어 이 사건 업소에 가서 변조한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고 술을 제공받아 마셨음.

〈청소년 ○○○의 진술〉

- 종업원이 본인은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만 실시했음.

3) 피청구인은 2019. 9. 3. 청구외 전 영업주 ***에게 처분(예정된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외 전 영업주 ***은 2019. 9. 16.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사건 당일 청소년 ○○○ 등 3명은 식사를 어느 정도 한 후, 차례로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 왔고 그로부터 약 10분 후, 경찰관이 가게에 들어와 이들에게 곧바로 다가가 신분증을 조사하고 청소년임을 적발한 것임.
- 단속한 경찰관은 “위조한 신분증을 제시했는데 주류를 판매해서 신고한다”라는 신고를 접수하여 단속을 나왔다고 말하여, 종업원 ○○○는 그때서야 이들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여 적발되었으며, 종업원이 성년으로 확인한 신분증(휴대전화로 촬영한 주민등록증 사진)이 위조한 것임을 알게 되었음.
- 당시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의심받을 것을 예상하고 신분증을 위조하였고, 성년으로 신분증을 위조한 청소년(○○○, 18세)은 다른 일행인 청소년(○○○, 15세)에게 “형”이라고 부르는 등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행위로 보임.
- 종업원이 밝은 조명의 계산대에서 신분증 사진을 확인하였음에도 육안으로 위조 여부를 전혀 식별할 수 없었으며, 단속 나온 경찰관조차도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정밀하게 위조한 신분증 사진이었음.
- 현재 전국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가게 매출 또한 상당히 저조하고, 개업 당시 대출받은 가게 내·외부 공사비까지 상환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주길 바람.

- 4) 광주지방검찰청OO지청장은 2019. 10. 7. 이 사건과 관련하여 “종업원 ○○○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라고 처분하였다.
- 5) 청구인은 2019. 10. 15. 피청구인에게 “위반사항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 신청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업소를 인수하여 운영한 기간(27일간)의 매출액 정산서를 제출하였다.
- 6)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의 일별 매출액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전 영업주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한 기간(2019. 9. 17. ~ 2019. 10. 13.(27일간))의 매출액은 66,165,000원으로, 연간 매출액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 연간매출액 : $(66,165,000\text{원} \div 27\text{일}) \times 30\text{일} \times 12\text{개월} = 882,199,999\text{원}$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1)

1. 일반기준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연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가.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

등급	연간매출액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액
15	850백만 원 초과 1,000백만 원 이하인 경우	100만 원

- 7) 피청구인은 2019. 10.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을 통보하였다.

□ 행정처분 내용

업소명 (업 종)	소재지	대표자	위반내용	행 정 처 분	
				처분내용	산출근거
24***** ***** (일반음식점)	OO시 OO로 177, 1층 (OO동)	***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과징금 (3,000만원)	100만 원*30일=3,000만 원 ※2019.9.17.~10.13. 총매출액 882,199,999원으로 과징금 15등급에 해당(1일 100만 원)

- 8) 2019. 10. 24.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2019. 10. 31.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1)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제1항제13호는 영업자가 같은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행정처분 기준) [별표 23]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11호 라목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 23] I. 일반기준 15호에는 위반사항 중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 또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에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지처분 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Ⅲ. 과징금 제외대상 제3호에서 식품접객업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3] I. 일반기준의 제15호에 따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Ⅲ. 과징금 제외 대상 제4호)하고 있다.
- 2)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라고 판시(대판 2012두1297)하고 있는바, OO경찰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청소년 보호법」 위반업소 조치 의뢰 통보,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종업원 ○○○에 대한 기소유에 처분 결과 등을 통해 종업원 ○○○가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 등 청소년 2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의 명백한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에 근거하여 관계 법령과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피청구인이 「식품위생법」 감경기준에 따라 기소유에 처분을 반영하여 영업정지 60일에서 2분의 1을 감경한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3,000만 원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해당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대판 98두11779, 대판 2004두3854)해야 할 것이다.

- 3) 청구인은 ①이 사건 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청소년 주류 제공은 청구인의 전 영업주가 운영할 당시 적발된 것으로, 전 영업주 또한 업소를 2년간 운영하면서 위반 전력이 없는 점, ②이 사건 청소년 주류 제공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하여 광주지방검찰청 OO지청장이 종업원 ○○○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점,
- ③ 사건 당시 종업원 ○○○는 청소년 ○○○ 등 2명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등 소정의 신분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이러한 점은 CCTV 촬영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 ④ 청소년 ○○○는 사전에 위조한 신분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종업원을 속였으며, 종업원이 나머지 일행 ○○○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는 ○○○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성년인 것처럼 행동하여 종업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종업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도록 상황을 유도하였고,
- ⑤ 청소년들이 식사를 마친 후 경찰에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해 술을 마신다”라고 스스로 신고하여 적발된 점,
- ⑥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약 한 달 전에 이 사건 업소를 인수하여 개업 당시 빌린 공사대금을 상환하면서 어렵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면 청구인과 가족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살펴보면,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관계 법령의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다소 무거운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 거주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감사 청구권자

☞ “주민감사청구”란 19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연서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제 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주민감사 청구대상

☞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주민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지 않는데요. 그럴 수 있나요?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않으며,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미달로 개표를 하지 않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청구 할 수 있나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포함)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 청구권자

☞ 19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이상, 1/5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주민이 주민투표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례를 찾아보니 우리지역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가 타지역 보다 비쌉니다.
조례 개정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개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조례개폐청구 제외대상

☞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의 부과 ·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 행정기구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소송은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 청구한 주민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기간은 제기 사유에 따라 처리기간이 끝난 날 또는 조치요구 내용·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 주민소송 제기권자

☞ 다음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

※ 주민소송은 주민감사청구를 거쳐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송 제기기간

소 제기사유	소 제기 기간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주민투표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주민투표운동은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운동권자

☞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투표 발의일부터 주민투표일의 전일까지 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

√ 공무원(해당 지방의회의 의원은 제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함)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해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 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주민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투표운동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
단신**

2년간 18회 '승차거부' ... "택시회사에 두 달간 2배 규모 운행정지처분 정당"

2년간 18회에 걸쳐 승차거부 신고를 당한 택시회사에 두 달간 운행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A콜택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사업일부정지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54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 16명은 2016년 11월부터 2018년 17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손님 승차를 거부하거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위반 행위를 총 18회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해 4월 택시발전법 제16조 위반 혐의로 A사에 같은 해 6월부터 7월까지 60일 동안 위반차량 16대의 2배수인 총 32대의 운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2014년 12월 승차거부와 도중하차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준수사항을 공고하고 이후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준수사항에 대해 확약하도록 한 다음 이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해 비치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사가 마련한 준수사항은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에 따라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부동문자로 기재된 1쪽 짜리 문서에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일괄해 서명한 것에 불과하다”며 “A사가 승차거부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어떠한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는지, 교육의 내용이 승차거부 근절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 소속 택시운수종사자들이 2년간 승차거부 등으로 적발된 내용은 총 44건이고 그 중 과태료 이상 처분이 이뤄진 내역이 이 사건 승차거부 등 18건”이라며 “이 같은 위반내역을 고려하면 A사가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해 한 준수사항 확약이나 교육 등 조치는 이 사건 승차거부 등 행위를 방지하는 데 그다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일부정지처분으로 A사가 입는 불이익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더 큰 불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자체 혈세 낭비 사업도 주민소송 대상

시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추진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 사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주민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 이 김학규 전 용인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2017두6346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용인시는 1조 32억원을 투입해 2010년 6월 용인경전철을 완공했다. 그러나 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서로 최소수입보장비율 등을 놓고 다툼을 벌여 2013년



4월에야 개통됐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경전철은 하루 이용객이 한국교통연구원이 예측한 16만1000명에 크게 못미쳐 용인시는 재정난에 허덕였다. 이에 시민들은 용인시장과 경전철 사업 책임자들을 상대로 1조 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용인시 주민들이 낸 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소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금 지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 행위 등에 대해 해당 지자체 장 및 직원, 지방의회의원, 해당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1,2심은 주민들이 청구한 배상액 대부분을 기각했다. 경전철 공사과정에서 제기된 비리와 행정 오류, 시의회의 예산 감시기능 마비와는 별도로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주민소송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인 박모씨가 경전철 관련 소송 과정에서 특정 로펌에게 과도한 입찰금액을 지출해 시에게 손해를 입힌 부분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

1심은 “박씨는 국제중재 대리를 위한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해 용인시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5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는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배상액 5억5000만원 보다 늘어난 10억25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주민감사청구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주민소송은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에 대해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지는 그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 등이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따라서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해서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은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단은 ‘용인시로부터 용인 경전철 수요예측 조사 용역을 의뢰받은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요예측 용역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행위이거나 사실에 해당하므로 용인시에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주민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주민소송의 대상을 주민감사청구사항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주민소송 청구 부분 다수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본안판단 없이 수요예측행위 자체가 지자체의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자체장이 혈세 낭비성 사업을 추진해 지자체에 손해를 입혔다면 주민들이 지자체장이나 민간투자사업 관련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사례에 해당한다”며 “또 주민들이 지자체에 사업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주민소송으로 요구할 수 있음을 밝힌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무
단신

신용카드 사용 ·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서와 승인내역서도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5도9917).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A씨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 · 승인 내역서를 발급받을 권한이 없는데도, 이를 숨긴 채 카드사에 “전 총장 B씨와 전 이사장 C씨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카드사는 B씨와 C씨가 사용한 학교 명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A씨에게 제공했다. A씨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서 등을 토대로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실명법 제4조 1항은 법원 명령이나 영장 등의 사유를 제외하면 명의자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자료를 제공·누설·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B씨와 C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전자메일 등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공받을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명예훼손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지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A씨가 제공받은 법인카드 사용·승인내역서에 ‘카드사용일자, 가맹점명, 사용금액, 거래승인일시, 가맹점명, 승인금액’ 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금융실명법 규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러한 정보는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비밀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상고심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및 승인내역서가 금융실명법이 정하고 있는 비밀보호 대상인 금융거래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상 카드회원과 가맹점, 가맹점과 카드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라 예금이나 금전의 상황이 이루어진다”며 “이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신용카드 대금에 관한 정보나 자료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승인내역은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에 해당한다”면서 A씨의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



초등 6학년생 점심시간 폭력 사고, 담임교사에겐 책임 못 물어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발생한 폭력사고에 대해 담임 교사에게 보호·감독의 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A학생 측이 B학생과 그의 부모, 담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12444)에서 “B학생 측은 A학생 측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던 A학생과 B학생은 점심시간에 서로 다투다 A학생이 상해를 입게 됐다. 물건을 돌려달라며 다툼을 벌이다 B학생이 A학생 몸을 밀쳤고, A학생이 뒤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과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된 것이다.

신 부장판사는 “B학생이 A학생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B학생과 그의 부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담임교사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는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교내 생활 관련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고 사고가 학교 일과 시간에 교내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돌발적이고 우연히 발생한 이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 저학년생에 비해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교사의 지도·감독이나 개입이 덜 요구된다”며 “이 사고가 발생한 때는 수업시간이 아닌 점심시간이라 교사가 학생들의 행동을 일일이 통제하기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법무
단신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게 “모텔가자” ...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직장 상사가 회식이 끝난 후 후배 여직원이 싫다고 하는데도 손목을 잡아 끌며 “모텔에 가자”고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 15421).

A씨는 2017년 7월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에서 회식을 마친 뒤 같은 회사 후배 여직원인 B씨와 단둘이 남게 되자 “모텔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 B씨가 거절하는데도 A씨는 계속해서 “모텔에 가자”며 강제로 B씨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후에도 직장에서 B씨 손등에 손을 올리거나, 같은 해 10월 또 다른 회식 자리에서

B씨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A씨가 접촉한 B씨의 신체부위는 손목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끈 것에 그쳤을 뿐 성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손을 잡아 끈 행위를 성희롱으로 볼 순 있지만, 강제추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7년 10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A씨의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일부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했다.

상고심에서는 A씨가 B씨의 의사에 반해 모텔로 가자며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끈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A씨가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B씨의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이미 성적인 동기가 내포돼 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3개월된 신입 사원이었고, A씨는 같은 부서 직장 상사였던 점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되자 손목을 잡아 끈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의 행위는 B씨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것일 뿐만 아니라 B씨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비록 B씨가 이후에 A씨를 설득해 택시에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초등학생에게 ‘동성애 위협’ 유튜브 보게 했다면… 학대행위 해당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AIDS) 위험성 관련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어린이집 부원장 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같은 행위는 아동들에게 정신적·심리적 충격을 주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3975).

대구의 한 어린이집 부원장과 원감인 A씨와 B씨는 2017년 6월 봉사활동을 나온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아무런 예고 없이 에이즈와 동성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사진과 유튜브 동영상은 약 30여분간 보여주고 시청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 등은 “해당 영상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예방차원에서 제작된 것”이라며 “아동학대를 하려고 한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등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동영상의 주된 취지는 동성애는 에이즈를 확산할 위험이 있으므로 동성애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성행위 방법까지 설명했다”며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따라 수반되는 정신적인 충격이나 불안감 등을 대비하기 위해 미리 동영상이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해 사전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들은 동영상 시청에 대해 거부의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다”며 “피해 아동들 또래 아동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 없이 이 같은 동영상을 시청하게 된다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교육적 순기능보다 심리적이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단순 범행기회 제공… 위법한 함정수사 아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4833).

김씨는 2019년 10월 A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 현금을 인출해주면 인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금책 역할을 제안한 것이다.

A씨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 천호역 앞 자전거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등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성매매 알선 혐의로 실형 전과를 가진 김씨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A씨는 경찰 수사협조자로, 나를 체포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건네준 것”이라며 “이는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라고 반박했다. 또 “A씨가 제공한 체크카드는 본인 것이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도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김씨는 포털사이트 카페에 글을 올리며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보였고, A씨 외에도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수거 및 인출 제안을 받고 2009년 10월 두 차례 체크카드를 수거해 2600만원을 인출·전달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A씨의 제안에 더해 적극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요구했다”면서 “자신이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하는 범행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면 성립요건을 충족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며 “체크카드가 다른 범행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다른 범죄에 해당 체크카드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한 상태라면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유인자(A씨)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피유인자(김씨)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했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는 때에는 설령 그로 인해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친구 구하려다 의사... '의사자'로 인정해야

바다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남성을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자 불인정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24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8월 강원도의 한 해수욕장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다가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의사상자 인정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는 A씨는 ‘자신의 행위로 인한 위해 상황 발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2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을 이유로 국무총리표창을 수여했다. A씨의 유족은 의사상자 불인정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던 친구의 구조요청을 듣고 그를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어 적극적인 구조행위를 하다가 구조에 성공하지 못한 채 목숨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친구와 함께 놀러갔다는 사실만으로 위난에 처한 상대방을 구제해야 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A씨는 ‘직무 외의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 사망한 경우’로서 의사상자법 구조행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법무
단신

경찰대 출신 경찰관, 재직중 일반대학교 파견교육기간은 의무복무기간서 빼야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임용된 경찰관이 재직 중 일반 대학교로 교육파견을 나간 기간은 경찰대 졸업생이 채워야 할 의무복무기간 6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교육파견 기간을 뺀 경찰 복무기관이 6년에 미치지 못하면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찰대 학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장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기타 경상이전수입 징수처분 취소소송(2017두416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씨는 경찰대를 졸업하고 2005년 3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됐다. 그는 경찰대 교수부 교무과 소속으로 2005년 3월부터 2007년 2월까지 2년간 고려대 정경대학에

교육과견 됐다. 장씨는 교육과견기간 동안 고려대 정치외교대학원생으로서 1,2학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 이후 그는 5년 3개월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의원면직으로 퇴직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은 “장씨가 경찰대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 6년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며 경찰대 학비 등 460여만원을 상환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장씨는 “고려대에서의 2년간 교육과견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되므로 경찰공무원 임용 후 퇴직까지 총 7년 3개월을 재직했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교육훈련법상 교육과견도 위탁교육훈련”

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은 6년간 국가경찰에 복무하여야 한다. 의무복무기간 중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비 등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경찰대학 졸업자의 의무복무기간 산입과 관련하여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경찰대 졸업자의 교육과견도 공무원교육훈련법이 정한 위탁교육훈련에 포함된다”며 “경찰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장씨의 교육과견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1,2심도 “교육과견 기간 동안 장씨가 피교육생으로서 교육훈련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대학원생들과 달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본연의 업무, 즉 범죄의 수사나 치안의 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교육과견은 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의 일환으로서 행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무
단신

17세에 독일서 양자로 입양 후 40세에 국적회복 신청했더라도

17세에 해외에 양자로 입양된 남성이 40세에 한국 국적을 회복하겠다고 신청하자 정부가 병역기피를 내세우며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누6794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1975년생인 A씨는 13세 무렵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16세가 돼 체류허가가 제한됐다. A씨는 이듬해인 1992년 독일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부모님의 지인에게 양자로 입양됐다. A씨는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했고 2003년 서울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했다. 2009년에는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을 얻고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생활

했다. A씨는 40세가 된 2015년 국적회복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사람’이라며 불허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16세 되면 체류 제한 공부 계속하려 독일 국적취득”

재판부는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A씨가 독일 국적이 아닌 학생으로서 만 16세가 될 무렵 독일에서 계속 공부하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해 후속 이주요건을 갖추거나, A씨가 독일인에게 입양돼 독일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아버지는 당시 국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등 A씨의 부모가 독일로 이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이에 A씨는 독일에서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국계 독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원고패소 1심 취소

그러면서 “A씨의 입양절차는 거주허가신청이 반려된 이후에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A씨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기 직전에서만 독일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는 독일에서 대체복무를 이행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에 병역을 기피할 의도가 있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나서야 국적회복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는 국적 상실 당시 A씨에게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음을 추단하게 하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다”며 “법무부의 불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최근 개정 시행법령



[8월 5일 시행법령]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이 보호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5.] [법률 제692255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정시설 수용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30일 이내 실외운동 정지의 징벌을 받은 수용자도 최소한 매주 1회는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양형(量刑)에 참고하거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교정시설의 장이 미결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한 경우 그 징벌대상행위 등을 적은 양형 참고자료나 수형자의 수용이력 등을 법원이나 경찰관서 등에 통보할 필요가 있는바, 양형 참고자료나 수용이력 등의 자료에는 미결수용자나 수형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통보행위의 근거를 법률에 명확하게 두도록 하고,

법 문장 중 어려운 한자로 된 용어를 쉬운 용어나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어 국민이 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8월 1일 시행법령]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이 내실화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0. 8. 1.] [법률 제30885호, 2020. 7. 30., 일부개정]

개정이유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를 도입하고,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개편하며, 종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중 전임 강사 관련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관 공모제 및 총량제 도입(제43조제2항)

- 1) 경쟁을 통해 역량이 뛰어난 교육기관이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을 통해 지정하도록 함.
- 2) 건설기술인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건설기술인 교육·훈련 개편(별표 3)

- 1) 건설기술인에 대한 기본교육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최대 3번까지 별도로 이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바, 수행하는 업무에 관계없이 1회 35시간만 이수하도록 기본교육을 통합하여 기본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임.
- 2) 발주청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품질향상 및 안전강화를 위해 발주청 소속

건설기술인을 위한 최초교육을 다른 건설기술인 최초교육과 별도로 분리하여 신설함.

다. 종합교육기관의 지정요건 중 전임강사 관련 요건 강화 등(별표 4)

다양한 전임강사 확보를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임강사 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늘리고, 전담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1명 줄임.



[8월 5일 시행법령]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30호, 2020. 2. 4., 일부개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이 범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등 신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필요한 바, 안전한 데이터 이용을 위한 사회적 규범 정립이 시급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 감독기능은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은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각각 분산되어 있어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어 왔음.

이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과학적 연구,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되,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성 강화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및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은 이 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발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가명처리로 정의함

(제2조제1호의2 신설).

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소속을 대통령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도록 하며, 현행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여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함(제7조, 제7조의8 신설, 부칙 제9조).

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 신설).

라.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함(제28조의2 및 제28조의3 신설).

마.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제28조의4 신설).

바. 누구든지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의5 및 제28조의6 신설).

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일원화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제6장 신설 등).

[7월 31일 시행법령] 주택 임대차 보장기간이 연장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0. 7. 31.] [법률 제17470호, 2020. 7. 31., 일부개정]

개정이유

주택시장의 불안정 속에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주택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임차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여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임대차 보장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갱신 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여 주택 임대차 제도 마련 시 부동산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일정 기간 중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임대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제6조의3제5항 및 제6항 신설).

다.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상한을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으로 하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분의 1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제2항 신설).

라.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설치하도록 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도 설치하도록 함(제14조 제1항).

마. 현재 법무부장관이 정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30조).



[8월 5일 시행법령] 외국인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여러 제도들이 개선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918호, 2020. 8. 5., 일부개정]

개정이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그 기업의 공장시설 신설·증설 등에 사용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신청인이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환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6944호, 2020. 2. 4. 공포, 8. 5.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철회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처리의 편의를 위해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사용용도(제2조제7항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공장시설·사업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본재·연구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를 외국인투자자로 인정함.

나. 국가 안전유지 관련 외국인투자 관리 강화(제5조제1항제2호)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주무부장관뿐만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의 장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 대상 외국인투자에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추가함.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기준 및 대상(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 제3호 신설)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기준을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자로 정하고, 현금지원 대상 외국인투자에 첨단기술 또는 첨단 제품 등을 연구개발함으로써 국내산업 및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를 추가함.

라.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취소·철회 등의 사유(제20조의4 신설)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취소·철회하거나 그 지원금을 감액·환수할 수 있는 경우를 신청인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현금 지원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투자 대상 법인·기업의 부도 등으로 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로 정함.

마.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 범위 확대(제25조제1항제2호사목부터 자목까지 신설)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하여 외국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또는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 등을 설치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추가함.

바. 외국인투자지역 내 입주계약 체결 및 해지(제26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은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고 해당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사. 직접처리민원사무 추가(별표 3 제13호 신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 중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파견된 공무원 등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의 종류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발급·열람 사무를 추가함.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최근 제정 자치법규



[8월 6일 시행] 전라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08. 06.] [2020-08-06 조례 제 5134호, 일부개정]

제1조(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의 이동이 있을 경우 제2호서식으로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바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7. 3. 16., 2018. 12. 31.)

③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별지 제3호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7., 2018. 12. 31.)

제3조(위원회의 설치)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4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 (개정 2002. 4. 20., 2010. 5. 4., 2012. 6. 20., 2014. 10. 10., 2017. 3. 16.)
2. 기획행정위원회 9명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6. 23., 2018. 12. 31.)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9명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0. 8. 13., 2011. 5. 13., 2014. 10. 10., 2015. 8. 27., 2016. 6. 23.)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9명 (전문개정 2010. 5. 4., 2014. 10. 10., 2018. 12. 31., 개정 2020. 8. 6.)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10명 (전문개정 2010. 5. 4., 2014. 10. 10., 개정 2016. 6. 23., 개정 2020. 8. 6.)
6. 농수산위원회 10명 (개정 2002. 4. 20., 2002. 8. 14., 전문개정 2006. 7. 5., 개정 2010. 5. 4., 2010. 8. 13., 2011. 2. 25., 2014. 10. 10., 2016. 6. 23., 2018. 9. 20.)
7. 교육위원회 10명 (신설 2010. 5. 4., 개정 2016. 6. 23.)

제5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6. 5. 12.)

1. 의회운영위원회
 -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 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6. 23.)
 - 나. 도민행복소통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6. 6. 23., 2018. 9. 20.)
 - 다. 감사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6. 23.)

-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4. 10. 10., 개정 2016. 6. 23.)
-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 바. 인구청년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 9. 20.)
- 사. 전남도립대학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개정 2018. 9. 20.)
- 아. 전라남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개정 2018. 9. 20.)
- 자. 전남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6. 23.) (개정 2018. 9. 20.)
- 3.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5. 13., 2015. 8. 27., 2016. 6. 23.)
-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5. 8. 27., 2016. 6. 23.)
- 나. 보건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15. 8. 27., 2016. 6. 23.)
-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2014. 10. 10., 개정 2015. 8. 27., 2016. 6. 23.)
- 라. 동부지역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 2. 25.) (개정 2014. 10. 10., 2015. 7. 13., 2015. 8. 27., 2016. 6. 23.)
- 4.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 가. 국제협력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6. 3. 10.)
- 나. 일자리정책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3. 10., 2018. 9. 20.)
- 다. 경제에너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1. 2. 25., 2013. 7. 19., 2016. 3. 10., 2018. 9. 20.)
- 라. 관광문화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4. 10. 10., 2016. 3. 10.)
- 마.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9. 8. 1.)
- 바. 기업도시담당관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 2. 25., 2014. 10. 10., 2016. 3. 10., 2018. 9. 20., 2019. 8. 1.)
- 사. 포물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2. 2. 27.) (개정 2014. 10. 10., 2016. 3. 10., 2019. 8. 1.)
- 5.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 가. 도민안전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5. 7. 13., 2016. 6. 23.)
- 나. 건설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2018. 9. 20.)
- 다.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5. 4., 개정 2016. 6. 23.)
- 6. 농수산위원회 (개정 2011. 2. 25., 2016. 6. 23., 2018. 9. 20.)
 - 가.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 7. 15., 2014. 10. 10., 2015. 7. 13., 2018. 9. 20.)
 - 나. 해양수산물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1. 2. 25.)
 - 다. 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해양수산과학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4. 2. 27.) (개정 2018. 9. 20., 2019. 8. 1.)
- 7. 교육위원회 (신설 2010. 5. 4.)
 - 가. 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0. 5. 4.)
 - ③ 그 소관이 어느 상임위원회에도 속하지 아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4. 10. 10.)

제6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9., 2012. 6. 20.)

② (삭제 2014. 5. 12.)

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삭제 2012. 6. 20.)

제7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 · 부의장의 임기와 같다. 다만, 임기만료 다음 날까지 위원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전문개정 2009. 1. 8., 단서신설 2012. 6. 20.)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7. 27.)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1. 7. 27.)

제8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1. 7. 27.)

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하되, 정견발표는 5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1. 7. 27., 2012. 2. 27.)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 선거(이하 “의장 등 보궐선거”라 한다)결과에 따라 의장·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 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제9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3. 16.)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2015. 1. 2.)

③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6개월 범위안에서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하되,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7. 5., 2011. 5. 13., 2013. 7. 26., 2015. 1. 2., 2017. 3. 16.)

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활동기간 만료일이 비회기 일 경우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 1. 8., 2011. 5. 13.) (단서신설 2019. 11. 7.)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0명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2013. 12. 5.)

⑥ 제1항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은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조사활동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5. 1. 2.) (개정 2017. 3. 16.)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신설 2018. 12. 31.) (단서삭제 2019. 11. 7.)

⑧ 제3항에 따라 활동기간을 연장할 경우, 활동기간 내에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서가 첨부된 연장안과 중간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제9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설 2011. 5. 13.) ①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 운영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5. 13.)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전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3., 2013. 7. 26.)

③ 제7조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3. 16.)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을 제외한 각 상임위원장이 소속 상임위원 중 2명 추천,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1명 추천, 의장이 나머지 위원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개선 시에는 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14. 5. 12.) (개정 2017. 3. 16.)

제9조의3(윤리특별위원회) (신설 2011. 5. 13.) 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 5. 13.)

②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전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3. 16.)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는 제7조제2항 준용하고,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5. 13.) (개정 2017. 3. 16.)

제10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해당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 7. 27., 2011. 10. 20., 2017. 3. 16.)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과 같고, 그 밖에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전문개정 2009. 1. 8.)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의장· 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7. 3. 16.)

제11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및 개선한다. 이 경우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원구성 본회의 전까지 후반기 의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4. 5. 12., 2017. 3. 16., 2020. 6. 18.)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상임위원 추천은 그 의원의 소속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협의하고, 소속 의원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의장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속 의원단체는 추천일 현재 의회사무처에 등록된 교섭단체 이외의 정당별 의원협의회 등 순수 의정활동 단체에 한정한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에 그 선임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④ 제3항과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의 위원 선임 및 개선에 있어서 교섭단체가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의장은 성별과 지역, 상임위를 안배하여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1.)

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추천한 의원 1명,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만, 위원 개선 시에는 의장이 추천한다. (신설 2014. 5. 12.) (개정 2017. 3. 16., 2019. 4. 11.)

⑥ 교섭단체 대표의원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추천된 의회운영위원의 임기는 후임 대표의원의 임기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신설 2017. 3. 16.) (개정 2019. 4. 11.)

제12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3조(부위원장) (개정 2011. 5. 13.) 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 5. 13., 2017. 3. 16.)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 5. 13., 2011. 7. 27., 2017. 3. 16.)

제1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 7. 27.) (단서삭제 2019. 11. 7.)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결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한다. (개정 2011. 7. 27.)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하며, 회기 중 소위원회 출석과 공무여행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예에 준한다. (개정 2011. 7. 27.)

제15조(전문위원과 공무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

「전라남도의회사무처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7. 27.)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안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7. 3. 16.)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한다. 이 경우에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 또는 위촉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7., 2013. 7. 26., 2017. 3. 16.)

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하며, 위촉할 업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지방공무원법」 제6장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 7. 27, 2013. 2. 20., 2013. 7. 26., 2017. 3. 16.)

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7. 27.)

제17조(기타사항) (개정 2016. 12. 2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6. 12. 29.)

[8월 6일 시행] 전라남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 2020. 08. 06.] [2020-08-06 조례 제 5131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프리랜서의 권리 침해와 차별 해소 등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유형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프리랜서”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 받지 않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 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프리랜서가 계약상 부당 대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프리랜서를 대등한 계약당사자로 존중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프리랜서를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군 또는 시·군 공공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해 프리랜서 보호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에 거주하거나 도에 소재한 공공기관, 법인·단체 또는 협회 등에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안정적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업종별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
 3. 재원 조달 방안
 4.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5. 법·제도 개선사항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라남도민, 전문가, 관련 단체나 협회,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정거래 지침)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향상과 계약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침(이하 “공정거래 지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적용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도 공공기관에 공정거래 지침을 적용하고, 시·군 및 시·군 공공기관에서도 제1항의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협력을 추진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부문에서도 공정거래 지침 등이 준수·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한다.

④ 공정거래 지침 등을 개발·보급·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법률지원 등) ①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세무·노무 상담 또는 계약상 분쟁 등에 관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률상담을 받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무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건강검진 실시) 도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기관·단체 지원) 도지사는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정한다.

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등
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
4. 업종별 불공정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
5. 도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
6. 그 밖에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월 6일 시행]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시행 2020. 08. 06.] [2020-08-06 조례 제 5132호,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물”이란 「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나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2.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부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남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4.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수산부산물의 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경우 수산부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부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
 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
 4. 제7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 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산부산물의 가공·처리·보관
2.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 및 개발
3. 수산부산물 재활용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4. 그 밖에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재활용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솔로몬의 재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규정이 없다고 장애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건가요?



별빛은 뚜렛증후군으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하여, 장애수당 등 복지급여의 지급,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려고 구청에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은 별빛이 가진 장애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장애인등록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체 일부분을 아주 빠르게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운동 틱’과 이상한

소리를 내는 ‘음성 틱’ 두 가지 증상이 모두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증상을 보유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질병을 말합니다.

1. 별빛: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주셔야 해요!
2. 구청장: 안타깝지만 별빛의 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 정답은 1번입니다.

정답은 1번. 별빛: 뚜렛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주셔야 해요! 입니다.

해당 사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이 될 수 있는 장애의 종류를 한정적 열거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으로 15가지 종류의 장애에 해당하는 자(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뇌전증장애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두50907 판결).

대법원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임조항의 취지에 따라 모법의 장애인에 관한 정의규정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15가지 종류의 장애인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보아 그 보호의 대상인 장애인을 한정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새길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특정한 장애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함이 분명할 뿐 아니라, 모법과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그 장애를 장애인복지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전제에 서 있다고 새길 수 없고 단순한 행정입법의 미비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그 장애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 중 해당 장애와 가장 유사한 장애의 유형에 관한 규정을 찾아 유추 적용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을 최대한 모법의 취지와 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뚜렛증후군은, 자신도 모르게 발작이 일어나거나 행동의 변화가 생기는 등 그 증상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는 ‘뇌전증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고(「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15호), 정신적 장애로 분류되고 사회적응 및 사회복귀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는 ‘정신장애(정신분열, 반복성 우울 장애)’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제8호)”는 점을 부가적으로 밝힘으로써 뚜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뚜렛증후군이 시행령 조항에 규정되지 않았어도 이 시행령 조항을, 오로지 그 조항에 규정된 장애에 한하여 법적 보호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구청장은 별빛의 장애인등록 신청을 받아줘야 할 것입니다.